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58 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 박은정·황운하·정춘생

서왕진 · 강경숙 · 김재원

김준형 • 문정복 • 임미애

장종태 • 전진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.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 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중 받지 않는 '형사상 소추'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,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,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

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24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7조의2(대통령의 불소추특권)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한다.

②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47조의2(대통령의 불소추특권)
	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
	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	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
	아니한다. 이 경우 공소의 제기
	가 있는 재판을 포함한다.
	②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
	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
	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
	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
	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